별지.

<table>
<tr><th>변경 전(제정)</th><th>변경 후(1차 개정(안))</th></tr>
<tr><td>제 8 조의 2 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
① 생략

② 생략

③ 제 1 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배당금은 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이익(상법 제 461 조의 2 에 따른 법정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거나, 부투법 제 28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의 초과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, 각 자본잉여금의 총 감소금액 및 감가상각누계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본조에서 같음) 범위에서 발행가액에 아래 표의 배당률(제 1 종 종류주식의 경우 3.40%를 말함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(1 년을 365 일로 하고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. 단, 윤년은 366 일로 한다). 단, 어느 사업연도 중 제 1 종 종류주식이 신규 발행된 경우, 그 신주의 배당률은 (본 항의 배당률 x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/ 365 x 2)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<table><tr><th>주식의 종류</th><th>배당률</th></tr><tr><td>제1종 종류주식</td><td>3.40%(1년으로 환산할 경우 6.80%)</td></tr><tr><td>보통주식</td><td>본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배당금에 따라 정함</td></tr></table>
④~⑥ 생략</td><td>제 8 조의 2 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
① 생략

② 생략

③ 제 1 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배당금은 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이익(상법 제 461 조의 2 에 따른 법정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거나, 부투법 제 28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의 초과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, 각 자본잉여금의 총 감소금액 및 감가상각누계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본조에서 같음) 범위에서 발행가액에 아래 표의 배당률(제 1 종 종류주식의 경우 4.00%를 말함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(1 년을 365 일로 하고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. 단, 윤년은 366 일로 한다). 단, 어느 사업연도 중 제 1 종 종류주식이 신규 발행된 경우, 그 신주의 배당률은 (본 항의 배당률 x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/ 365 x 2)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<table><tr><th>주식의 종류</th><th>배당률</th></tr><tr><td>제1종 종류주식</td><td>4.00%(1년으로 환산할 경우 8.00%)</td></tr><tr><td>보통주식</td><td>본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배당금에 따라 정함</td></tr></table>
④~⑥ 생략</td></tr>
<tr><td>-부 칙

2. <신 설></td><td>부 칙

2. (시행일) 1 차 개정 정관은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완료일부터 시행하되 변경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.</td></tr>
</table>